

진도군 고시 제2019 - 호

고군면소재지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일

진도군수



제1조 목 적

- ①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생활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양한 광고물의 등장, 광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②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량, 유형, 크기, 배치 등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제시하여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 공간 창출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제2조(사업개요)

| 사업명칭 | 사업기간 | 사업구간 | 사업규모 | 사업비 |
|---------------------|---------------|--------|--------------|----------|
| 고군면 농촌중심지 간판정비사업 | '19. 3월 ~ 12월 | [붙임 1] | 19개소 간판정비 | 51,000천원 |

제3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전라남도 진도군 일반농산어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면소재지 및 밀집상가에 대하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한다.

①진도군 고군면 오산리 일원(7,900㎡)

가. 국도 18호선 : 진도대로 276(고군파출소) ~ 진도대로 325
3,700㎡

나. 내산로 : 진도대로 291(고군이발관) ~ 내산로 8(고군 119지역대)
700㎡

다. 지수길(3,500㎡)

- | | |
|---------------------------------|--------|
| 1) 지수길 1-2(선진농협고군지점) ~ 진도대로 326 | 1,900㎡ |
| 2) 지수길 38(광장노래방호프) ~ 지수길 54 | 1,400㎡ |
| 3) 지수길 47-6 ~ 지수길 47~2 | 200㎡ |

제4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수량

1. 1개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가. 관공서, 의료기관에서의 표시

나.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의 벽면이용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다. 약국(+, 약 등) 및 미·이용업소(회전사인)의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② 표시금지 광고물

1. 세로형 간판

2. 공연간판(다만, 건물 부지 내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3. 옥상간판(다만, 1층건물중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목적광고물, 종합병원, 숙박시설인 경우는 제외)

4. 돌출간판(다만, 약국 및 미·이용업소의 표시등, 벽면이용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건물의 4층 이상에 거주한 업소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전단, 벽보, 애드벌룬,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다만, 애드벌룬과 선전탑의 경우 공공목적광고물일 경우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다.

③ 간판의 색채

1. 바탕색은 주변 건물과 환경에 조화되도록 건물 계통색을 사용해야 하며,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색상과 빨강·파랑·노랑·녹색 및 검정색의 경우 순도 높은 원색은 가급적 사용을 억제한다.

④ 간판의 형태 및 규모

1.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동일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네온·전광판 등의 점멸방법 사용금지.
3. 기존의 광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신축건물의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게시틀을 설치한다.(가로형·돌출형 간판 게시틀 설치)

⑤ 간판의 문자

1.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고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도형)과 심벌 사용을 유도한다.

제5조(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① 수량은 1개 업소에 1개의 벽면이용간판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1개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유연성 원단(플렉스 등)을 사용한 판류형 설치를 금지하고 건물 정면의 3층 이하에만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상업지역의 경우는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다
- ③ 동일 건물 내의 가로간판 설치 위치는 같은 층의 간판들과 일렬로 정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규격 및 설치방법
 1. 판류형의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전면폭에 맞게 표시하여야하며

(최대 10m) 세로폭은 80cm(판의크기) 이내로 한다.

2. 입체형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80% 이내로 표시해야 하며(최대10m) 세로폭은 60cm 이내로 설치하되 층간폭의 80%를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
3. 건물의 4층 이상의 건물에는 해당 건물명, 건물 사용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 중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이 가능하다. 단, 간판 가로크기가 건물 상단 전면폭의 2/3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에는 간판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공익목적에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돌출형간판의 표시방법)

① 수 량

1. 1개 업소는 하나의 돌출형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벽면이용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건물의 4층 이상에 입주한 업소에 한한다.
2. 건물의 3층 이하에 위치한 업소는 돌출간판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의료시설, 약국, 이·미용업소는 보행자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픽토그램형(+, 약, 표시등)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미용업소 표시등은 세로높이 0.7m, 지름 0.3m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소형돌출간판은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총 수량에서 제외한다.

② 위 치

1. 건물의 전면 폭에 관계없이 건물 좌측 또는 우측 1개소에 1줄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 돌출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단, 이웃 건물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해 간섭에 따른 분쟁을 없애며, 건물 전면 폭이 15m이상이고 연면적이 1,000m²이상일

경우 좌우측에 각각 1줄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규격 및 설치방법

1.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m(게시틀 포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세로길이는 2m 이내로 설치하고 간판의 두께는 0.3m 이내로 한다.
2.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80% 이내로 하며, 주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가로크기는 간판 가로크기의 75%이내, 그 외 보조표기 내용의 면적은 간판면적의 15% 이내로 한다.
3.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는 돌출폭, 두께, 가로폭 등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4. 간판의 설치는 고정 설치대를 이용하여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설치한다.
5. 간판의 표시내용은 2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6.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해안지역의 강한 바람에 대비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소형돌출간판의 형태는 업소를 상징하는 것을 형상화 하여 조형적으로 표현해야하며 규격은 최대 0.36㎡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예) 가로1.2m×세로 0.3m 또는 0.6m×0.6m 로 표시

제7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목적광고물, 종합병원, 숙박시설의 경우 관련법령 규정에 정한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단층인 건물에 한하여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애드벌룬, 선전탑, 아치광고물, 벽보 및 전단의 표시방법)

① 아치광고물, 벽보 및 전단의 표시를 금지한다.

② 애드벌룬 및 선전탑의 표시를 금지한다.(다만, 공익목적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전기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형광도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 ③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점멸은 금지한다.

부칙(진도군 고시 2019-00, 2019.03.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기준)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제한 및 완화한 사항 이외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라남도 조례, 진도군 조례에 따른다.

[붙임 1]

 위치도(고군면소재지 일원)



사진설명

위성위치도(고군면 소재지 일원)